

# 2025학년도 2학기 수업시간표 작성지침

1. 수업운영방식 : 오프라인 수업

2. 강의 담당 교원 시간배정 원칙

가. 전임교원

1) 책임시간

교원구분	책임시간 (학부강의 기준)	비고
일반교원	학기당 11시간, 연간 22시간	* <u>주4일 이상 분산 배정</u> (미배정 요일이 특정 요일에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배정) *전임교원의 강의배정은 원칙적으로 <u>1일 6시간 초과 불가</u> * <u>이러닝 강좌는 강의 배정일수에 산입하지 않음</u> *일반교원, 교육중점교원은 수5,6교시에 ‘같이가치찾기’ 교과목이 배정됨 *교수 1인당 대학원 강좌 중 수강생이 5명 이상인 경우 연간 최대 3시간(2학점은 2시간)을 감면함 *책임시간 감면 대상은 수업시간표 작성 공문 시행시 첨부 예정
교육중점교원	학기당 11시간, 연간 22시간	
강의전담교원	학기당 12시간, 연간 24시간	
외국인교원	학기당 15시간, 연간 30시간	
산학협력중점교원	학기당 6시간, 연간 12시간 <b>(*학기당 6시간 초과 불가)</b>	
연구전임교원	학기당 3시간, 연간 6시간 (계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음)	

※ 이러닝, 팀티칭, 합반 등 강의유형별 강의 시간 인정기준은 《전임교원 책임시간 운영에 관한 규정》 별표1 참조 (학교 홈페이지에서 규정 확인 가능)

## 2) 전임교원 강의배정 시 유의사항

구분	유의사항 (발생사례 포함)	참고사항	비고
주4일 미배정	*수업시간표 확정 이후 요일/교시 변경 및 폐강 등으로 해당 사례 발생	*수업관리규정 제6조(교과목 배정 및 강의시간 배정) 제11항에 의거 주4일 미배정 시 <b>제재 조치(주의, 경고) 가능</b>	
책임시간 미달	*수업시간표 확정 이후 담당교수 변경 및 폐강 등으로 해당 사례 발생 *폐과 및 신설학과 소속으로 책임시간 준수가 어려운 경우 FIND칼리지와 협의를 통하여 교양과목 배정, 신설 등 책임시간이 미달되지 않도록 협조 요망	*전임교원 책임시간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(책임시간의 준수) 제2항에 의거 책임시간 미달 시 <b>제재 조치(주의, 경고) 가능</b>	

3) 폐강 확정 이후 주 4일 미배정 및 책임시간 미달 시 사유서 등 요청 예정

나. 비전임교원(강사 포함) 시간배정

교원구분	강의배정시간	비고	세부사항 문의 (교무연구팀)
객원교수	주당 3시간 이상 9시간 이하	<b>*10시간 이상 불가</b>	내선 0116
겸임 및 초빙교수	주당 3시간 이상 9시간 이하	<b>*10시간 이상 불가</b>	
명예교수	주당 3시간	*최초 임용 후 2년 이내 기간에만 강의 배정 가능 (이후에는 강의배정 불가) <b>*3시간 초과 불가 : 교육부 지침에 의거</b>	
	주당 3시간 이상 9시간 이하 (정년 전 명예교수 임용시)	*만 65세에 도달하는 학기까지는 9시간 까지 가능(학부 및 대학원 강의 포함)	
강사	주당 6시간 이하	<b>*7시간 이상 불가</b>	내선 0113

다. 강의배정 관련 유의사항

- 1) 강의시간 및 강의 배정일수는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(강사 포함)의 교수업적평가, 승진, 재임용 등에 활용되므로 배정 시 유의 요망
- 2) 신규교원 임용이 지연되는 경우 프로그램에는 요일/교시 및 강의실만 입력
  - 담당교수 미배정 강좌의 경우 추후 배정 가능
  - 제출된 자료에 의거하여 학사지원팀에서 일괄처리 예정 (인사발령 및 사번 생성 이후 처리)
- 3) 강사 등 재임용 대상자의 경우 수업시간표 작성 시 가급적 프로그램에 사번 입력 요망
  - 수업계획서 입력 및 공지 등 학생들의 수강신청을 원활하게 지원하려는 취지
  - 추후 해당 교원의 재임용 탈락 시 담당교수 변경 가능함
  - 시간표 작성기간 내 사번을 입력하지 않고, 추후 재임용 확정 후 사번 입력 요청 가능  
(단, 강사 재임용 여부는 2025년 8월 확정 예정으로 수강신청기간 이후임을 감안 요망)

라. 강의의 질 제고를 위하여 **강의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과목은 주 2회로 나누어 분강 배정**

1)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 가능

연번	연강배정 가능강좌	비고
1	교양과목	
2	4학년 전공과목	
3	실험·실습·실기 과목	<b>*이론 수업을 포함하는 경우 연장 불가</b>
4	임상교원 담당 과목	
5	야간강좌	
6	비전임교원(강사 포함) 배정강좌	
7	수업관리규정 제9조(단위 강좌)에 따른 대단위 강좌	<b>*수강정원 101명 이상</b>
8	학부 주당 4강좌(‘같이가치찾기’ 제외) 이상이면서 출강일이 4일 이상인 전임교원의 교과목	
9	금요일 배정강좌	
10	교무위원 및 연간 6시간 감면자 배정강좌	
11	교과목 특성상(혁신적 수업모델, PBL 수업 등) 연강이 필요한 경우 총장 허가	<b>*불임의 요청서에 구체적인 사유 작성하여 제출_총장 결재를 득한 후 허가</b>

2) 전임교원 배정강좌는 위에 해당하는 강좌가 아닌 경우 분강 배정 원칙

마. 야간 13교시 이후 배정강좌는 전임교원 배정 원칙

바. e-러닝 교과목의 경우 전임교원 배정 원칙 (e-러닝 운영지침에 의거)

사. 팀티칭 강좌 배정 시 대표교원은 다음과 같이 배정함(고등교육통계 등 각종 통계자료의 제출기준임)

1) 전임교원이 포함된 경우: **대표교원은 전임교원을 배정**

2) 전임교원이 없고 비전임교원(강사 포함)만 포함된 경우: **대표교원은 비전임교원(강사 포함)을 배정**

아. 현장실습과목, 외부기관에서 강사료를 지급 받는 과목 등 특이사항이 있는 과목은 책임시간에 미포함되며 담당교수는 교무연구처와 협의하여 배정

자. 시간표 배정 이후 담당교수를 변경하는 경우

1) 전임교원에서 비전임교원(강사 포함)으로 변경하는 경우 분강을 연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기존의 요일/교시를 그대로 담당

2) 비전임교원(강사 포함)에서 전임교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연강을 분강으로 변경하여 담당 가능

차. 수업시간표가 확정된 이후 교과목 및 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

카. 가~ 차 항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원칙에 따라 임의로 배정할 수 있음

### 3. 강의블록

교시	월	화	수	목	금		
0	교양블록	교양블록	교양블록	교양블록	교양블록		
1		교양 블록	교양/전공 블록				
2						교직 블록	
3							
4				교양 블록	교양 블록		
5			같이가치찾기				
6							
7			교양/전공 블록			교양 블록	ROTC (3,4학년)
8	교양 블록	교직 블록					
9							
10	일반 교양과목	기초교육, 일반 교양과목	기초교육, 일반 교양과목			기초교육, 일반 교양과목	
11							
12							
13		디지털문해, 자유학예, 체험소양 과목	디지털문해, 자유학예, 체험소양 과목				
14							
15							

※ 유의사항

- 수요일 5-6교시는 수업 배정이 불가함(‘같이가치찾기’ 관련 교과목 배정 시간)
- 1학년 계열(학부)기초 및 전공과목은 강의블록을 반드시 적용
- 수 1-3교시 및 7-9교시는 교양/전공블록임 [1학년 계열(학부)기초 및 전공과목 배정 가능]

- 전공블록은 색상이 없는 백색 부분임
- 야간 교양강좌는 요일/교시가 지정됨
- 미래라이프대학의 경우 같이가치찾기를 제외한 강좌는 강의블록 별도 적용

#### 4. 요일별 수업시간 균등배정 원칙

##### 가. 목적

- 1) 1년 365일 구성원들이 상주하며 전문성을 기르고 지혜를 탐구하는 대학의 기틀 마련
- 2) 월요일 및 금요일에 대한 수업배정 공동화 현상 방지

##### 나. 균등배정 원칙

##### 1) 교양과목 배정

**: 수요일 및 목요일 집중배정을 지양하고 다른 요일로 적절히 분배 배정**

※ 특정요일 집중 시 강의실 부족 발생

##### 2) 계열(학부)기초 및 전공과목 배정 (FIND칼리지 및 미래라이프대학 제외)

**: 계열(학부)기초 및 전공과목은 각 20%씩 월~금요일에 분산하여 배정 (요일별로 15~30% 이내 배정 가능)**

#### 5. 교양 및 교직과목 시간배정 원칙

연번	내용	비고
1	교양과목은 학사지원팀에서 최종 입력하여 배정	
2	‘같이가치찾기’ 교과목은 수요일 5~6교시에 배정하여 운영 (같이직업찾기: 5교시, 같이능력찾기: 6교시)	전산정보팀에서 시간표 작성 완료 후 일괄 입력
3	*학과(부)에서 개설하는 교양과목은 원칙적으로 전임교원 담당 *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없는 경우 개설을 유보하되, 6개월 이하 (한 학기 이내)의 연구년 및 휴직의 경우 비전임교원 배정 가능 *전임교원이 퇴직 후 명예교수, 객원교수 임용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퇴직 전 담당했던 교양강좌 배정 가능	*교육과정 편성지침 제2조(교과과정 편성 원칙) 제4항에 의거 *기초교육과목 제외
4	FIND칼리지학부에서 개설하는 교양과목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비전임교원에게 배정 가능(신규 임용자에게 배정 불가)	
5	<b>주간 교양과목은 교양블록에만 배정 (3. 강의블록 필히 확인)</b>	기초교육과목은 교양블록에 상관없이 사전 배정
6	야간 교양과목은 야간학과 계열(학부)기초 및 전공과목 개설학점 등을 감안하여 학사지원팀에서 사전 배정	
7	교직과목은 교직블록 내에 배정	목요일 배정 시 ROTC블록 유의

## 6. 계열(학부)기초 및 전공과목 시간배정 원칙

### 가. 공통사항

연번	내용	비고
1	계열(학부)기초 및 전공과목은 각 학과(부)에서 최종 입력	학사프로그램에 직접 입력
2	<b>계열(학부)기초 및 전공과목은 월~금요일에 각 20%씩 분산 배정 (요일별로 15~30% 이내 배정 가능)</b>	미래라이프대학 소속학과 개설 과목의 경우 토요일 및 일요일 배정 운영 (필요 시 평일 야간 배정 가능)
3	일반선택 가능여부, 수강정원 및 강의실 수용인원 등을 반드시 점검 <b>① 일반선택 가능여부 및 수강정원은 시간표 작성기간에 학과(부)에서 자체수정 가능</b> <b>② 시간표 작성 시 강의실 수용인원을 확인하지 않아 수강인원이 수용인원보다 많은 경우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점검 요망</b>	
4	수요일 5~6교시에는 수업배정 불가(‘같이가치찾기’ 배정)	
5	금요일 배정 과목은 전임교원 우선배정을 원칙으로 함	
6	토요일 강의를 희망하는 경우 강의배정 가능	
7	강의블록은 3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이 전공(복수/부전공 포함)을 수강하고, 3·4학년들의 저학년 강의 수강(재수강), 일반선택, 교직 등을 원활히 수강할 수 있도록 강의블록 내에서 시간표 작성 요망	<b>블록이 중첩되게 전공강좌를 배정(예. 2~4교시 혹은 6~8교시 배정)하는 경우 타 강좌를 수강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배정 시 유의 요망</b>
8	자격증 관련 과목은 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배정	
9	학교 재정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바 분반을 최소화하여 운영	<b>분반 기준을 필히 확인하여 시간표 작성</b>
10	<b>e-러닝 교과목의 경우,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</b>	<b>e-러닝 운영지침 제5조(e-러닝 교과목 개설 및 채택) ②항</b>

### 나. 1학년 계열(학부)기초 및 전공과목

#### 1) **전공블록에 배정 필수(교양블록에 배정 불가)**

※ 단, 수 1~3교시 및 7~9교시의 경우 1학년 계열(학부)기초 및 전공과목 배정 가능

#### 2) 1학년 대상 기초교육과목으로 개설되는 과목을 원활히 수강할 수 있도록 1학년 계열(학부)기초 및 전공과목 편성 시 참고 요망

영역	교과목명	분반	요일(교시)
영어	생활영어	8	화(1-2, 3-4) 수(1-2, 3-4) 목(1-2, 3-4)
	영어회화기초	2	
	영작문기초	2	
사고와표현	읽기와쓰기	3	
	인문사회읽기와쓰기	3	
	이공계열읽기와쓰기	1	
	독서와토론	4	
컴퓨터활용	컴퓨터실무활용(한글과PPT)	7	
	컴퓨터실무활용(엑셀)	4	

다. 2학년 전공과목

- 1) 1학년 계열(학부)기초, 전공 및 교직과목을 고려하여 담당교원의 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배정
- 2) 전공블록에 배정 (교양블록 배정 가능)

라. 3·4학년 전공과목

- 1) 저학년 계열(학부)기초, 전공, 교직 및 ROTC 과목을 고려하여 담당교원의 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배정
  - 교직이수학생이 있는 교직블록에 유의하여 배정 [없는 경우 교직블록에 수업배정 가능]
  - ROTC 학생이 있는 ROTC블록에 유의하여 배정 [없는 경우 ROTC블록에 수업배정 가능]
  - 전공과목 중 교직 기본이수과목들은 중복되지 않도록 배정 (특히 타 학과(부)와 중복여부 필히 체크 요망)
- 2) 전공블록에 배정 (교양블록 배정 가능)

## 7. 분반 기준

가. 시간표 작성 시 기준

1) 수강정원

연번	이수구분	유형	분반 당 기준 인원
1	교양	이론	70명
		이론및실습, 실습	40명
		e-러닝	150명
		원어민 교원 영어강좌, 유학생 대상 한국어 강좌	25명
2	교직	이론	50명
		실습	시설 최대 수용 능력
3	전공	이론	70명
		실험·실습·실기	시설 최대 수용 능력

- 2) 분반하고자 하는 교과목은 최근 2년간 수강인원이 수강정원의 120%를 상회하는 경우에 분반할 수 있으며 분반 시 전임교원으로 배정
- 3) 과거 분반을 하였더라도 분반된 인원이 과목 수강정원보다 적을 경우 분반에서 제외

나. 수강신청 후 분반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제출하면 분반 기준에 따라 검토 후 분반 가능

- 계열(학부)기초 및 전공과목에 대한 추가 분반 필요시 구체적 사유를 제출해야 하며, 학사지원팀 검토 후 허가
- 전임교원이 담당한 강좌에 한함 [비전임교원(강사 포함)이 담당한 강좌는 추가 분반 불허(팀티칭 포함)]
- 추가 분반으로 인한 초과강의료는 미지급

## 8. 강의실 배정 원칙

가. 강의배정 불가 강의실 현황 (2025학년도 2학기 기준)

강의실	배정 불가 요일 및 교시	불가사유	사용부서
본관 5101호	수 4~7교시	교내외 행사	교무연구처
	금 1~13교시		
학술정보원 601호	수 4~6교시	사업진행	취업진로지원팀

※ 상기 현황은 변경 가능

나. 배정 기준

- 1) 학과 전용 강의실(실험·실습실, 일반강의실)
  - 교과목 수강인원 및 특수성에 따라 학과에서 자율 배정
- 2) 공용강의실(실험·실습실, 일반강의실)
  - 학사지원팀에서 교양강좌 우선 배정 후 전공교과목 강의 배정 허용(선착순, 단, 교과목 수강인원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배정)
- 3) 스마트강의실 및 토론식강의실(아래 내역 참조)
  - 학사지원팀에서 교과목 활용내용 등을 고려하여 배정

구분	강의실	구축 내용	구축 목적 및 예상 활용 내용	수용인원
스마트 강의실	동약관 1102호	기존 전자교탁, 빔/스크린 등 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플립러닝 수업</li> <li>▪ 프로젝트기반학습</li> <li>▪ 토론식 수업 등</li> </ul>	48명
	동약관 1103호	6인용 원형테이블 및 의자 등		48명
	동약관 2101호	기존 전자교탁, 이동식 모니터 등 활용 전자칠판 설치 (분리형 컴퓨터 포함) 추적 카메라 설치		50명
	동약관 2102호	기존 전자교탁, 빔/스크린 등 활용 추적 카메라 설치		50명
	동약관 2110호	기존 전자교탁, 모니터 등 활용 전자칠판 설치 (분리형 컴퓨터 포함) 추적 카메라 설치		54명

동약관 3109호	무선 AP 및 PEO 전용스위치(무선인터넷) 전자칠판 설치 (분리형 컴퓨터 포함)	36명
동약관 4112호	6인용 원형테이블 및 의자 등	24명
동약관 5112호	기존 전자교탁, 이동식 모니터 등 활용 6인용 원형테이블 및 의자 등	32명
식물관 502호	기존 전자교탁, 빔/스크린, 이동식 모니터 등 활용 6인용 원형테이블 및 의자 등	48명

다. 유의사항

: 동약관 및 인재관에서 교양과목 배정이 가능한 일반 공용강의실은 16개로 특정요일에 수업이 집중될 경우 미래관, 치약관 등에 수업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. 끝.